

---

## 2022년 충청남도 조례 입법평가 최종 평가결과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2022년 충청남도 조례 입법평가 최종 평가결과

❖ 충청남도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2022년 평가대상 조례(217건)에 대한 최종 입법평가 결과임

## I 개요

- 추진근거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평가대상 : 217건 조례(도청 177건, 교육청 40건)\*  
\* 2019.1.1. 이전 제정·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조례. 다만, 입법평가 시행 조례 제외(2020년 25건, 2021년 188건)
- 평가기간 : 2022년 3월~12월

### 【추진 경과】

절 차	주요내용	비고
① 계획 수립·통보('22.3.)	▶ 입법평가 대상조례,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	
② 설명회 개최('22.4.)	▶ 입법평가 추진개요, 기초자료 작성·제출방법 등	
③ 자료 제출·수집('22.5.~6.)	▶ 평가대상 조례별 기초 및 증빙자료 수집·분석 등	보완자료 수시수집
④ 입법평가 실행('22.6.~12.)	▶ 조례별 규범성, 실효성 등 검토 및 대안 제시 - 기본평가 실시 - 기본평가 결과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수렴 - 심층평가 대상 조례 선정 및 평가 실시 - 조례별 평가의견 및 대안 제시	(입법평가팀 + 한국법제연구원) ↓ (입법평가위원회 제1차~제4차 회의)
⑤ 최종 평가의견 심의·의결	▶ 입법평가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한 평가의견 결정	(제5차 회의)
⑥ 최종 평가결과 확정	▶ 의장님 최종 평가결과 확정	

## II 평가결과

- 총 괄
  - 입법평가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재적위원 15명 중 13명 찬성으로 평가대상 217건 조례 중 182건에 대해 개선필요 최종 확정(35건 현행 유지)
  - 개선이 필요한 182건 조례에 대해 총 251개 개선방안 확정(개선방안 중복사항 합산)
  - 개선방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일반정비 149건, ② 개정권고 74건, ③ 통합권고 4건, ④ 폐지권고 10건, ⑤ 기타 의견 14건 임

## 【최종 평가결과(총괄)】

위원회 (평가대상 조례)	평가결과	개선필요 조례	개선방안										현행유지 조례	
			일반정비		개정권고		통합권고		폐지권고		기타			(합계)
계	(217)	182	84	(149)	16	(74)		(4)	6	(10)	8	(14)	(251)	35
기획경제	(35)	35	15	(30)	2	(17)	-	(2)	2	(3)	-	-	(52)	-
행정문화	(40)	39	30	(39)	-	(5)	-	(1)	-	(1)	-	(2)	(48)	1
복지환경	(39)	36	17	(34)	-	(15)	-	-	-	(1)	2	(4)	(54)	3
농수산해양	(14)	14	4	(10)	-	(6)	-	-	2	(3)	2	(0)	(19)	-
안전건설소방	(49)	34	14	(23)	5	(13)	-	-	1	(1)	4	(7)	(44)	15
교육	(40)	24	4	(13)	9	(18)	-	(1)	1	(1)	-	(1)	(34)	16

※ (청색) 1개 개선방안에만 해당하는 조례 건수 / (적색) 개선방안 중복사항 합산

### ○ 개선방안별 평가결과(요약)

개선방안	이유	평가결과
<b>일반정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조항 약칭사용, 법령 제명 및 조례 제명 오기, 인용 법령 조항 오기, 조례를 주체로 구성한 문장 정비, 상위법령 개정 시 인용조항의 위치이동으로 조항 변경된 사항 미반영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7건 중 총 149건</li> <li>○ 149건 중 84건은 단순 일반정비만 필요</li> <li>※ 65건은 중복의견 포함</li> </ul>
<b>개정권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법령의 내용상 개정사항 미반영, 법령상 조례 규정 사항 규칙으로 규정,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7건 중 총 74건</li> <li>○ 74건 중 16건은 개정권고 의견만 제시</li> <li>※ 58건은 중복의견 포함</li> </ul>
<b>통합권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 조례와 통합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7건 중 4건</li> <li>- 4건 중 2건은 일반정비 또는 통합권고</li> <li>- 4건 중 1건은 개정 또는 통합권고</li> <li>- 4건 중 1건은 통합 및 폐지권고</li> </ul>
<p>※ 통합권고(4건)는 통합하지 않는다면 유지필요</p>		

연번	조례명	상임위	개선방안
9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기획경제	통합/폐지
23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행정문화	일반/통합
20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경제	일반개정/통합
18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교육	일반/통합

  

폐지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위법령 개정·폐지, 중복조례 존재 등으로 폐지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7건 중 1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건 중 6건은 폐지권고</li> <li>10건 중 2건은 일반정비 또는 폐지권고</li> <li>10건 중 1건은 개정 또는 폐지권고</li> <li>10건 중 1건은 통합 및 폐지권고</li> </ul> </li> </ul>
	※ 개정 또는 폐지(1건)/일반정비 또는 폐지(2건)/통합 및 폐지권고(1건)은 폐지하지 않는다면 유지필요 의견	

  

연번	조례명	상임위	개선방안
9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기획경제	통합/폐지
6	충청남도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문화	일반/폐지
1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복지환경	일반/폐지
10	충청남도 향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농수산해양	일반개정/폐지

  

기타	위원회 관련 권고	5건
	폐지된 조례	1건
	차년도 재평가 필요	1건
	법령정보데이터 수정 필요	2건

  

현행 유지	개정이 불필요한 조례	35건
-------	-------------	-----

### Ⅲ 향후계획

- 집행부 소관부서 대상 최종 평가결과 설명회 추진 : '23. 1.
  - ※ 참석대상 소관부서, 일시 및 장소 등 추후 공지
- 최종 평가결과 상임위별 보고 추진 : '23. 2.

<붙임> 조례별 평가결과 및 평가의견(요약) 1부.

조례별 평가결과 및 평가의견(요약)

순번	조례명	상임위	조례 유형	평가결과	비고	의견
1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기획경제	자치	일반/개정		제5조(구성)에서 “도의회 추천” 및 “외부인사” 참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협의회는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협의회를 위원회 등으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하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향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2	충청남도 도정조정회의 조례	기획경제	자치	일반 정비		
3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획경제	자치	일반/개정		타 시·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검토  “분과”는 “분과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표기
4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기획경제	자치	일반/개정		업무협약의 관리를 도지사가 총괄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을 검토
5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기획경제	위임	개정 권고		제1조(목적)에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선을 배제함  「지방자치법」 제105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거나 혼선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함(조례 제14조)
6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기획경제	위임	개정 권고		조례 제17조(등록보상금)와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만족도 및 타 시·도의 사례를 감안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보상금 상향 여부 결정 필요
7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경제	위임	일반/개정		법령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제2조는 불필요한 규정임  법 제19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도록 규정 신설 검토

순번	조례명	상임위	조례 유형	평가결과	비고	의견
						연구원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명확히 정비
8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기획경제	위임	일반/개정		조례 제6조(위원회의 기능)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조례를 참고하여,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과제의 선정", "부실 학술용역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9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기획경제	위임	통합/폐지	조례 통합 권고 조례 폐지 권고	이 조례를 폐지하고,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비 필요(조례 통합)  이 조례 제3조의 수당과 제4조의 여비규정을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이 조례 제3조로 대체)와 제17조의2(이 조례 제4조의 내용을 추가)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합 가능함  유지하는 경우 제3조와 제4조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정비 필요
10	충청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기획경제	위임	일반/개정		조례 제6조(보고)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삭제 검토
11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경제	위임	일반/개정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경영평가의 대상을 결산서를 포함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비  제14조(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법률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준용의 대상이 아니면, 법률상 근거에 따라 관리·감독하면 되므로 조례 규정 불필요(삭제)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조례 유형	평가결과	비고	의견
12	충청남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기 획 경 제	위임	일반 정비		
13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기 획 경 제	위임	일반/개정		제1조(목적) 조항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  제6조(위원의 해촉)의 사망의 경우 당연 해촉 사유이므로 별도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음
14	충청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기 획 경 제	위임	일반/개정		도의회 동의 및 보고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15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기 획 경 제	위임	일반 정비		
16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기 획 경 제	위임	일반 정비		
17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일반 정비		
18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일반 정비		
19	충청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일반 정비		
20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일반/개정/통합	조례 통합 권고	제12조(보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규정이 잘못되어 있어 이를 정비
21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일반 정비		
22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기 획 경 제	위임	일반/개정		제10조(위원의 제척)는 일반적인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  제15조(사업)는 현행 제9호를 두 개의 호로 나누어 규정하도록 정비(하나의 호에서는 하나의 내용만 규정하도록 함)
23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기 획 경 제	위임	일반/개정		조례 제5조제4항의 위원 임기를 명확히 함  조례 제13조의 불필요한 조항 번호를 삭제함
24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일반/개정	<심층 분석 권고>	정보화 역기능 차단과 관련된 기술적 부분(특히 제3장)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적합한 상담·치료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조례 유형	평가결과	비고	의견
						<p>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담당부서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는바,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을 제출받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p> <p>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국가정보화기본법」은 「지 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 삭제하 고 정비</p>
25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일반 정비		
26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일반 정비		
27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기 획 경 제	위임	일반 정비		
28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일반 정비		
29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기 획 경 제	위임	일반/개정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 조문을 정비 필요
30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일반 정비		
31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일반 정비		
32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기 획 경 제	위임	일반 정비		
33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기 획 경 제	위임	폐지 권고	조례 폐지 권고	<p>국가법령정보센터를 보면 부칙 이외에 본문이 보이지 않으며, 2013년에 이미 충청남도청은 대전에서 충청남도 홍성군으로 이전을 완료한 바, “도청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존속은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설명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p> <p>「충청남도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거나,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보임</p>
34	충청남도 도청 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 획 경 제	자치	폐지 권고	조례 폐지 권고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2. 12. 31.에 조례를 폐지 검토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조례 유형	평가결과	비고	의견
35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기획경제	위임	일반/개정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제20조(특별회계의 설치)의 개발사업 기한 연장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간의 연장 및 담당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을 개정함
36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	행정문화	자치	일반 정비		
37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행정문화	자치	일반/개정	<심층 분석 권고>	<p>목적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비 검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의 예에 따라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일반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권리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권리”라 부르고, 인권은 인간이 태어남으로써 개인에게 귀속되는 자유와 평등에 관한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의 규정을 정비</p>
38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행정문화	자치	일반 정비		
39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행정문화	위임	일반 정비		
40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행정문화	위임	일반/개정		<p>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게 정비 필요</p> <p>2022년 「주민투표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2022.10.18.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p>
41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문화	위임	일반/폐지	조례 폐지 권고	<p>‘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17년 6월 12일로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강원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p>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조례 유형	평가결과	비고	의견
						유지하는 경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문장의 정비가 필요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를 차등화 할 이유가 없다면 보궐위원도 임기를 동일하게 규정
42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행정 문화	위임	일반 정비		
43	충청남도 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행정 문화	자치	일반 정비		
44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행정 문화	위임	일반 정비		
45	충청남도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행정 문화	위임	일반 정비		
46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행정 문화	위임	일반/개정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문장의 정비가 필요함
47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행정 문화	위임	일반 정비		
48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	행정 문화	자치	일반/개정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게 정비  향후에도 이 조례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별표의 지급기간(즉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49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행정 문화	위임	일반 정비		
50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행정 문화	위임	일반 정비		
51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행정 문화	위임	일반 정비		
52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행정 문화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심층 분석 권고>	
53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행정 문화	위임	일반 정비		
54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행정 문화	자치	일반 정비		
55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변경	행정 문화	위임	일반 정비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조례 유형	평가결과	비고	의견
56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행정 문화	위임	일반/기타		
57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행정 문화	위임	일반 정비		
58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행정 문화	자치	일반/통합	조례 통합 권고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3조의 수당과 제4조의 여비 규정을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검토
59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 문화	자치	일반 정비		
60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행정 문화	위임	일반 정비		
61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행정 문화	위임	일반 정비		
62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행정 문화	위임	일반 정비		
63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행정 문화	위임	일반/개정	<심층 분석 권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게 정비 필요  사립 작은 도서관 등 도서관 종류 정비 등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규정 신설 검토  제3조(적용범위)의 경우, 상위법령은 당연히 적용되므로 불필요한 규정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정비
64	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	행정 문화	위임	일반 정비		
65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행정 문화	위임	일반 정비		
66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행정 문화	위임	일반 정비		
67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행정 문화	위임	일반 정비		
68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행정 문화	자치	일반 정비		
69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행정 문화	자치	일반 정비		
70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행정 문화	위임	일반 정비		

순번	조례명	상임위	조례 유형	평가결과	비고	의견
71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문화	자치	일반 정비		
72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행정문화	위임	일반 정비		
73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행정문화	위임	일반 정비		
74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문화	위임	일반/기타		
75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행정문화	위임	일반 정비		
76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복지환경	자치	일반/폐지	조례 폐지 권고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대체된 것으로 보임. 실효성이 없다는 집행부 의견에 따라 폐지 권고. 다만, 유지하는 경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적합하도록 조례 문장 등 정비 필요
77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복지환경	자치	일반/개정		자치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도록 목적조항 정비 검토  제8조의 사업규정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입법의 경제성 확보  위원회의 운영현실에 맞게 규정 정비(현재 위원회가 미구성된 점, 대체 위원회 없다는 점, 대부분의 사업이 자리를 잡은 상태로 심의하여 결정할 사항의 안건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개선 검토)
78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 정비		
79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 정비		
80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조례명 변경	복지환경	위임	일반 정비		
81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	자치	일반 정비		
82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 정비		
83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복지환경	자치	기타	전산정비 필요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충청남

순번	조례명	상임위	조례 유형	평가결과	비고	의견
						도조례 제4992호, 2021.07.20. 제정·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평가대상 조례는 폐지되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여전히 현행 조례로 나타남.
84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개정		목적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  제11조제3항의 경우, 법령에서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라고 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바,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다시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체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조항 정비 검토(삭제 검토)
85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86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87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개정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88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	자치	일반/개정		자치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도록 목적조항 정비 검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
89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 정비		
90	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 정비		
91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 정비		
92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	자치	기타(조례 기폐지됨)	조례 폐지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이 조례는 폐지됨
93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개정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례 입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

순번	조례명	상임위	조례 유형	평가결과	비고	의견
						제9조(대행사업과 비용부담)의 “도지사”가 보건의료 등의 사항을 의료원으로써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정비
94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개정		「지역보건법」이 2015.11.18. 전부개정되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이동되었음. 제1조(목적)에서 관련 조문을 인용하도록 정비  제4조(위원의 임기)에서 연임을 허용하는 경우 규정 불필요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에서 개인위원이 아닌 위원회가 자문 및 자료협조를 하도록 문장 표현 정비
95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개정		위원 임기 관련 규정 정비
96	충청남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	자치	일반 정비	<심층 분석 권고>	
97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	자치	일반/개정		비밀엄수 의무의 부여 대상을 도지사 이외에 업무관련자로 확대
98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개정/기타	규칙 제정 권고	적용범위 규정을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으로 정비  규칙을 정하도록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으므로 규칙 제정 권고
99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 정비		
100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 정비		
101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개정	<심층 분석 권고>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환경 교류·협력에 관한 규정 안 신설 검토
102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개정/기타	규칙 제정 권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 반영하여 정비 필요
103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기타	규칙 제정 권고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 제정 권고
104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개정		제3조(녹색제품 구매 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에서 약칭된 부분을 삭제하였으므로 제5조제1항에서 약칭 정비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조례 유형	평가결과	비고	의견
105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 정비		
106	충청남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 정비		
107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변경	복지환경	위임	일반 정비		
108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개정		위원회 기능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정비
109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110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개정		“현행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제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함
111	충청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 정비		
112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 정비		
113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 정비		
114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	위임	일반/개정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115	충청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농수산해양	위임	일반 정비		
116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수산해양	위임	폐지 권고	조례 폐지 권고	「충남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충남농업테크노파크 법인 해산에 따라 폐기가 타당함. '충남 농촌활성화재단(2025년 예상)'조례 제정시 폐지 예정임
117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농수산해양	위임	일반/개정	<심층 분석 권고>	목적조항에서 위임의 근거를 명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함
118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농수산해양	위임	일반/개정		
119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	농수산해양	위임	일반/개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순번	조례명	상임위	조례 유형	평가결과	비고	의견
	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지역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회를 둘 것인지 결정하였다면 조례에서는 이를 “둔다”고 규정하도록 정비
120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농수산해양	자치	일반/개정	<심층 분석 권고>	인용하고 있는 조례 「충청남도 농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정비 및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 정비
121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농수산해양	위임	일반/개정	<심층 분석 권고>	2023년 시행예정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개정 시 정비 필요
122	충청남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농수산해양	위임	기타	전산정비 필요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479호, 2019.4.10. 제정·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평가대상 조례는 폐지되었으나, 종합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현행 조례로 나타남. 해당 조례 전산정비 필요
123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금관 운영관리 조례	농수산해양	위임	일반 정비		
124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농수산해양	자치	일반/개정/폐지	조례 폐지 권고	「항만법」에서 직접 조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례로 달리 정할 사항이 없음. 이 조례를 폐지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비 검토
125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농수산해양	위임	일반 정비		
126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수산해양	위임	기타(차년도 재평가)	차년도 재평가	조례 입법평가를 위한 기초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금차 평가가 어려움
127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농수산해양	위임	일반 정비		
128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농수산해양	위임	폐지 권고	조례 폐지 권고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을 시 수산연구소장의 양식어장적지조사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어, 우리도에서는 본 조례를 제정(1988. 08. 10.)하여 1996년까지 어업인의 의뢰에 따라 적지조사 후 적지조사서를 발급하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조례 유형	평가결과	비고	의견
						여 왔으나, 어업인 편익과 행정규제를 완화코자「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1997. 03. 24.)하여 양식어장적지조사서 첨부 조항(제5조제1항제6호) 삭제된 이후 관련 양식적지조사 실적 없음
129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자치	일반 정비		
130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일반 정비		
131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일반/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1항의 도지사가 제출해야 하는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한 추가
132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전건설소방	자치	폐지 권고	<심층 분석 권고>	조례의 위임 근거법령이었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하고 있고, 관련 규칙이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는 본 조례의 폐지 권고
133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일반 정비		
134	충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135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일반/개정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필요
136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일반/개정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필요
137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전건설소방	자치	일반/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가 삭제됨으로써 조례의 법령근거가 없어짐(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발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가 삭제됨으로써 조례의 법령근거가 없어짐(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발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조례 유형	평가결과	비고	의견
					<심층 분석 권고>	다만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지원하여 도 내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자치조례로 운영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목적조항등의 개정이 필요함
138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안전건설소방	자치	일반 정비		
139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 운영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일반/개정		「건설기술관리법」은 2014년 개정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됨.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정비
140	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일반/기타	규칙 제정 권고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규칙을 제정하지 않음. 규칙 제정 권고
141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일반 정비		
142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일반/기타	위원회 운영 권고	위원회의 구성은 적정하나 2019년 이후 운영 실적이 확인되지 않음. 조례에 따른 위원회 개최가 필요
143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일반 정비		
144	충청남도 주택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145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146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개정/기타	별표 개정 필요 <심층 분석 권고>	특별한 개정사항은 없으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에 대한 별표의 수정이 필요함  타 시·도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신설 검토
147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148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기타	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 필요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본 조례에서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의 실정에 맞게 검토한 후 신설할 필요가 있음
149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개정 권고		특별한 개정사항은 없으나 타 지자체의 유사조례처럼 제도개선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조례 유형	평가결과	비고	의견
						에 대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감사제도의 효율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150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기타	위원회 운영 권고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권고
151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기타	위원회 운영 권고	특별한 개정사항은 없으나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152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기타	위원회 운영 권고	현행 유지. 다만 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하도록 운영 권고 필요
153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154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일반 정비		
155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자치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156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일반/개정		상위법령의 등록기준 개정을 반영하여 정비함
157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일반 정비		
158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일반 정비		
159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160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일반 정비		
161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162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163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일반 정비		
164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개정 권고	<심층 분석 권고>	상위법령의 폐지 및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전반의 근거법령 인용 및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165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자치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166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개정 권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규정을 제시하였으며 이외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 필요 사항을 검토하여 추가할 수 있을 것임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조례 유형	평가결과	비고	의견
167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개정된 「공인중개사 법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을 조례 제2조제1항의 별표에 반영해야 하였으나 2022.10.18.개정으로 반영됨	
168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169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일반 정비		
170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일반/개정		특별한 개정사항은 없으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추가 규정 및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약칭부분 정비가 필요함
171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172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173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개정 권고	2022년 12월 시행예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관련 위임사항을 점검해야 함  <심층 분석 권고>	2022년 12월 시행예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관련 위임사항을 점검해서 개정안 제시 필요
174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일반 정비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조례 유형	평가결과	비고	의견
175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개정 권고		체험관 운영기간에 대한 규정 정비 체험관 인력배치 기준에 대한 근거 법령 명시
176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177	충청남도 119 시민 수상구조대 설치 운영 조례	안전건설소방	위임	일반 정비		
178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교 육	자치	개정 권고		띄어쓰기 미비 및 오탈자가 존재하고 있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가 필요함 "변상"을 "보상"으로 정비
179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교 육	자치	일반/개정		대구미래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 참고하여, 직무 태만의 경우를 위원 해촉 사유로 포함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음
180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교 육	위임	일반/개정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
181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교 육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182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교 육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18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	교 육	자치	개정 권고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교육기부자문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다만, 위원회의 경우 실제 운영상 필요를 판단하여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184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	교 육	자치	일반 정비		
185	충청남도교육청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교 육	자치	일반/개정		교육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새로운 유형으로서의 협동조합 활동의 기반 마련을 검토할 수 있음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조례 유형	평가결과	비고	의견
						전라남도 교육청의 사례와 같이 성과관리규정을 신설하여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참여할 근거 규정의 신설을 고려할 수 있음
186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교 육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187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조례	교 육	위임	폐지 권고	조례 폐지 권고	2009년도부터 장학금 신청자가 전무한 상태로 실효성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었기에, 조례의 폐지가 적절함
188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교 육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189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교 육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190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교 육	위임	일반/개정		제3조의 내용상 구성이 아니라 위원 및 위원장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맞게 조제목을 변경하고 항으로 정리
191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교 육	자치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192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교 육	위임	일반/개정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인용하고 있는 위임의 근거를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
193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교 육	위임	개정 권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16조(참여예산 심사기준)와 같이 주민참여예산 선정 기준을 각 호를 두어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집행부에서는 중간보고 이후 의견조회에서 매년 수립·시행 하고 있는 참여예산제운영계획에서 주민의견 수렴 시 제외되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별도의 주민참여사업을 위한 예산이 배정된 것이 아니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참여예산제로 개정안 의견과는 차이가 있다고 규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194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교 육	위임	개정 권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195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교 육	위임	일반/통합	<심층 분석 권고>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는 상위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조례 유형	평가결과	비고	의견
					조례 통합 권고	제41조)에 근거한 위임조례이나, 이와 유사한 충청남도교육발전협의회는 자치조례로 규정되어 있음. 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발전협의회는 교육협력 및 지원 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기능상 유사하여 통합 방안 검토
196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교 육	자치	개정 권고		조례 제3조(적용대상) 제1항 제4호는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조례 제4조에서는 존속기한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5조에서는 기한을 포함하여 위원회 설치 절차 전반을 규정하여 개괄하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197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교 육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198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교 육	자치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199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	교 육	자치	일반/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와 같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00	충청남도교육상조례	교 육	자치	개정 권고		경상북도 조례와 같이 시상이 부적절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시상을 취소할 근거 규정을 미리 신설할 것을 권고함  중간보고 이후 집행부 의견이 다음과 같이 제시됨: "정부가 포상하는 업무지침에 중앙행정기관 등 각 기관 이하는 표창에 대해서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상훈법」과 타 시도 유사조례에도 시상의 취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권고개정(안)을 수용하여 향후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1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교 육	자치	개정 권고		경기도 조례와 같이 전입한 2, 3학년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조례 유형	평가결과	비고	의견
						록 개정을 권고함
202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교 육	위임	일반/개정		조례 제6조 인성교육진흥협의회에 관한 규정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위임근거를 명기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음
203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교 육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204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교 육	위임	일반 정비	조례 현행 유지	
205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교 육	자치	일반/개정		부산광역시 조례와 같이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조항을 추가하여 전문성을 재고할 수 있음
206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교 육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207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교 육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208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교 육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제3조의2(수요조사)에서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편의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신설을 검토해볼 수 있음
209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교 육	위임	개정/기타	규칙 개정 권고	서울특별시 조례와 같이 교육장이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  상위법령의 위임에 맞게 행정처분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정비. 이 경우 시행규칙의 해당 내용에 대한 정비를 권고할 필요가 있음
210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교 육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211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 육	자치	일반 정비		
212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교 육	위임	일반 정비		
213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 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교 육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조례 유형	평가결과	비고	의견
214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 육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215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교 육	위임	기타(현행유지)	조례 현행 유지	
216	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교 육	위임	개정 권고		경기도 교육청 등의 유사조례를 참고하여 조례 제4조의 용어를 명확히 정비
217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 육	위임	개정 권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 또는 해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